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미애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감정평가 업무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감정평가서의 작성 주체에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를 포함 하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관련 감정평가서 작성 주체 범위 확대(안 제17조 및 제18조의2)

- 1)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 신청 및 편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작성 주체를 감정평가법인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사는 업무수행능력과 관계없이 기본재산 감정평가 업무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음
-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등”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정의하는데,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도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관련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 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개정하여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 제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8. 11. ~2020. 9. 21.)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기본재산의 처분) ①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인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 ----- ----- ----- -----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① (생략)	제18조의2(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익법인은 법 제11조제3항	② -----

제3호에 따라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기본재산의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인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를 포함한다)	2.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 ----- ----- -----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법무심의관	
연 락 처	(02) 2110 - 3507